

1. 개정이유

철도시설의 건설,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선로작업 시 작업일정과 운행일정 간 조정과 열차감시원 관리 등 작업자 안전과 열차의 운행안전을 담당하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철도시설 및 차량의 설계·제작, 시공·감리, 안전진단 및 점검업무 등을 수행하는 철도안전전문기술자를 육성하기 위한 철도안전전문기관을 지정·운영하여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으나, 신청사항의 변경, 업무수행경력, 사고이력, 근무처 등 경력관리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관리강화로 철도교통 안전확보를 사전에 강화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자격부여 시 근무처·경력·학력 등 자격부여·관리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신청사항에 대한 변동 시 신고하도록 함(안 제60조의2제1항)

나. 신청사항 확인요청에 대한 응답의무 도입(안 제60조의2제3항)

신청사항의 진위여부에 대한 기관 및 업체에 확인요청 및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응답의무의 근거마련

다. 자격관리자료, 경력확인·인력보유 증명서 근거마련(안 제60조의2제4항)

자격관리에 대한 자료관리,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요구시에 경력확인 발급근거 추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5개 철도안전 전문기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0조의2제1항 중 “**자격부여**”를 “그 자격·경력·학력 및 근무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신청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제60조의2제3항 중 “**자격부여 신청**”을 “**자격부여 또는 변경 신청**”으로, “**확인하기**”를 “**확인하거나, 신청사항이 정확한지를 확인하기**”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제60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부여 및 관리에 관한 자료를 유지·관리하여야 하며,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0조의2(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부여 절차 등) ① 법 제69 조제3항에 따른 자격을 부여받 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<u>자격부여</u> 신청을 하 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	제60조의2(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부여 절차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그 자격·경력·학</u> <u>력 및 근무처 등 국토교통부령</u> <u>으로 정하는 사항을 첨부하여</u> <u>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청하여</u> <u>야 하며, 신청한 사항이 변경된</u> <u>경우에는 그 변경신청을 하여야</u> <u>한다.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<u>자격부여</u> 신청을 한 사람 이 해당 자격기준에 적합한지를 <u>확인하기</u> 위하여 그가 소속된 기관이나 업체 등에 관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	③ ----- --- <u>자격부여 또는 변경 신청-</u> ----- <u>확인하거나, 신청사항이 정확한</u> <u>지를 확인하기</u> ----- ----- . <u>이 경</u> <u>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 또는</u> <u>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</u> <u>요청에 따라야 한다.</u>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<u>자격부여에 관한 자</u>	④ ----- ----- <u>자격부여 및 관리에</u>

<u>료를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</u> ⑤ (생 략)	<u>관한 자료를 유지·관리하여야 하며,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.</u> ⑤ (현행과 같음)
--	--